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2일, 정성국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2025.11.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3.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성국의원)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학부모’의 권리·책임·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태임.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지역학부모지원센터·학부모회 등 학부모 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2항, 「교육기본법」 제2장, 「초·중등교육법」 제3장 등 현행 법령은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하여 자녀의 교육을 위한 의무·권리 및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 등 보호자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보호자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호자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교육, 상담, 학교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

시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자의 의무 이행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김준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392호),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664호),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561호)에서도 부모 등 보호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위치, 시책의 내용, 실태조사의 주체와 내용, 학부모지원센터의 내용, 시행일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일한 기준 마련을 위해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박성훈의원, 신정훈의원, 백승아의의원, 김준혁의원, 정성국의의원, 정을호의원, 진선미의원, 서영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